

의안번호	제 446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12월 일 (제 285 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9년 12월 7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6
----------	-----

제출연월일 : 2009. 12. 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교원의 정보화 연수,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과 활용 지원, 이러닝 지원 체제의 구축·운영, 행정 정보 전산화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을 설립하며,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청주지역에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일부를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6-4번지에 둠(안 제23조제2항)

나. 본청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교육정보원"를 둠(제9절)

(1)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을 신설함(안 제31조의1)

(2) 충청북도교육정보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안제31조의2)

(3) 충청북도교육정보원장의 사무를 분장함(안 제31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1) 청주영어체험센터 :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

(2) 충청북도교육정보원 : 2010년 예산안에 반영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09.10.19. ~ 11. 7., 의견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어교육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6-4번지에 둔다.

제3장에 제9절(제31조의1, 제31조의2, 제31조의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제31조의1(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정보화 연수,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과 활용 지원, 이러닝 지원 체제의 구축·운영 및 행정정보 전산화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3번지에 둔다.

제31조의2(원장) 교육정보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의3(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관련 연수 및 정보 활용 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보 종합 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교육망 및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관리
6. 그 밖에 교육정보화에 관련된 업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 제9절(제31조의1부터 제31조의3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3. 정보관련 연수 및 정보 활용 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4. 교육정보 종합 서비스에 관한 사항5. 교육망 및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관리6. 그 밖에 교육정보화에 관련된 업무

관계법령 발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69호]

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